#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0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ㆍ허성무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할법원(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제외한다)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 21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은 해사전 문법원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

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제7조(관할법원) ①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 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 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 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 5.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신 설>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사사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관할법원(중 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제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②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② (생 략) <신 설>

외한다)은 해사전문법원을 말 한다.

(현행과 같음)

③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 <u>사소송법」 제217조</u>제2항, 「민 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 2항의 법원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